

제255회 제1차 정례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**



2022. 10. 14.

기획행정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54
----------	------

2022. 10. 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2. 8. 22.
- 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9.
- 다. 상정일자 : 2022. 10. 7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고상순 의원

나. 제출사유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애인체육회 정의 (안 제2조제4호 신설)
-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(안 제10조 신설)
- 위탁단체 범위 확대 (안 제9조,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 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 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 - 기 타
- 1) 입법예고(2022. 9.14. ~ 9. 18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- 의안번호 제1945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2년 8월 22일 고상순 의원이 제안하여 2022년 9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근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2조에서 “장애인체육회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 제4항에 따른 단체로 정의함.
 - 안 제10조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사무국 운영경비, 사무국 임차료, 그 밖에

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함.

-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 제3항 “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” (22.8.11시행)에 근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, 조례가 개정되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